

2026

대기환경기사, 산업기사 악취방지법

엠북 환경법규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법, 시행령, 시행규칙 종합 정리
- ★ 최근 법령 신설 및 개정 내용 반영
- ★ 26분 완성

도서명 : 악취방지법

ISBN : 979-11-7393-210-6

발간일 : 2026-03-09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4,000원



악취방지법

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5)

제2장 사업장 악취에 대한 규제(p11)

제3장 생활악취의 방지(p29)

제4장 검사 등(p37)

제5장 보칙(p42)

제6장 벌칙(p48~52)

[약어]

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부령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

시군구는 시장(대도시의 장은 제외), 군수,
자치구의 구청장
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
국가등은 국가, 지자체
시도지사등은 시도지사, 대도시의 장
관리지역은 약취관리지역
허용기준은 배출허용기준
방지시설은 약취방지시설
검사기관은 약취검사기관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제1장 총칙

1~4조

1. 목적

-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악취 방지
-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함

2. 정의

가. 악취는 황화수소, 메르캡탄류, 아민류,

자극성 있는 물질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 주는 냄새

나. 지정악취물질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다음 물질

1) 2005년 2월 10일부터

- 암모니아, 메틸메르캡탄, 황화수소,
다이메틸설파이드,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,
트라이메틸아민, 아세트알데하이드, 스타이렌,
프로피온알데하이드, 뷰틸알데하이드,
n-발레르알데하이드, i-발레르알데하이드

2) 2008년 1월 1일부터

- 톨루엔, 자일렌, 메틸에틸케톤,
메틸아이소부틸케톤, 뷰틸아세테이트

3) 2010년 1월 1일부터

- 프로피온산, n-뷰틸산, n-발레르산,
i-발레르산, i-뷰틸알코올

다. 악취배출시설(이하 배출시설)은 악취 유발 시설, 기계, 기구 등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부령으로 정하는 것

라. 복합악취는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해 후각을 자극해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

마. 신고대상시설은 신고해야 하는 배출시설

바. 기타

- 1)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
- 2) 시도는 특별시, 광역시, 특별자치시, 도(그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), 특별자치도
- 3) 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(그 관할구역 중 대도시는 제외), 특별자치도지사

3. 국가등 및 국민의 책무

가) 국가는

-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/시행
- 지자체 시행 악취방지시책 재정/기술 지원
- 악취가 생활환경, 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/연구, 악취방지 기술 개발/보급 노력

나) 지자체는

- 관할구역의 자연적/사회적 특성을 고려해 악취방지시책 수립/시행
- 악취방지 노력하는 주민에 재정/기술 지원, 정보 제공

다) 모든 국민은

- 사업활동 하거나 음식물 조리, 동물 사육, 식물 재배 등 일상생활 하면서 타인의 생활에

피해 주지 않게 악취방지 노력

- 국가등 시행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

라) 장관은 10년마다 악취방지 종합시책

수립/시행 요

4. 악취실태조사

가. 시도지사등은

1) 관리지역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 농도, 악취

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

조사하고 장관에 결과 보고

2) 관할구역에서 악취로 인해 발생한 민원과

조치 결과 등을 매년 장관에 보고